

'15년 육군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계획

1. 목 적

'15년도 육군 민간부사관 모집선발 계획을 모집부대(서)에 제공하여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는데 있음.

2. 방 침

가. 연간 4개기로 구분하여 선발하며, 남군/여군 각 2개기씩 선발한다.

나. 평가는 1차평가, 2차평가, 최종선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1차평가는 필기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를 실시한다.

가) 필기평가 40%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필기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특기별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인성검사 결과는 A, B, C, D, I 등급으로 구분하되 2차평가 시 심층면접 후 **합·불** 판정한다.

다) 1차 선발시 남군/여군은 특기별로 **200% 범위내외**로 선발할 수 있다. 단, 10명 이내의 소수선발 특기는 **300~500% 범위내외**로 선발할 수 있다.

라) 1차 필기평가 간 부정행위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부사관 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별지 #7 참조】

2) 2차평가는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가) 1차평가 합격자에 대해 개인별로 지정된 일자(1일)에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실시하며 **일자 조정은 불가함**.

나) 신체검사는 모집부대 통제하, 지정된 병원 및 일자에 실시한다.
* 여군지원자 산부인과 검사는 지정된 군병원에서 실시하나, 본인 희망시 병무청 지정 민간병원(258개)에서 실시.

3) 최종선발은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특기별 종합성적순으로 심의 후 선발한다.

가) 부족특기 발생시 2, 3지망자 중 성적우수자를 전환하여 선발한다.

나) 예비역 간부는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 및 징계사실과 현역복무 시 복무태도, 개인자력을 확인하여 최종선발 심의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다. 예비역 병장 중 육군훈련소 입영일 기준, 전역 2년 이내자는 부사관 지원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라. 모집홍보는 인사사령부에서 통합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관련부서에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할 수 있다.

3. 일반계획

가. '15년 모집인원

1) 기수별 모집인원 : 남군 000명/여군 000명

구 분	계	여군 1기	남군 1기	남군 2기	여군 2기
인 원(명)	0,000	000	000	000	000

2) 특기별 세부 모집인원 : **기수별 모집공고** 참고

나. 선발일정

모집 기수	지 원 접수기간	1차 선발		2차(최종) 선발		
		필기평가/인성검사 직무수행능력	1차 발표	신체검사(산부인과검사)	체력/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최종 발표
여군1기	'14.12.8 ~ '15.1.2	1.24	2.17	2.23 ~ 2.27	3.2 ~ 3.13	4.10
남군1기	'14.12.29 ~ '15.1.23	2.14	3.17	3.23 ~ 3.27	3.30 ~ 4.10	5.8
남군2기	'15.4.6 ~ 5.1	5.23	6.16	6.22 ~ 6.26	6.29 ~ 7.17	8.28
여군2기	'15.8.10 ~ 8.28	9.19	10.20	10.26 ~ 10.30	11.9 ~ 11.27	12.18

☞ **기수별 모집 특기 현황** 【별지 #1 참조】

다. 선발배점 : 100점

구분	계	1차평가(60점)		2차평가(40점)				
		필기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신체검사	신원조회
배점	100	30	30	10	30	합·불	합·불	적·부
		*12점 미만은 불합격		합·불제 병행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는 불합격 판정으로 면접평가 미 실시

라. 지원자격

1) **학 력** : 고교 졸업이상의 학력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가) 고교 3학년 재학생은 임관일 이전 고교 졸업시 지원 가능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시 인정하되 최종 합격자라도 고교졸업 불가시 **합격취소** 처리

나) 단, 중학교 졸업자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다) 수송관련 특기(241, 243, 436)는 운전면허 소지자(수동), 의무특기(411)는 전공학과 재학생 또는 면허소지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라) 군악(342) 특기는 음악관련자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전공실기 평가를 실시한다.

☞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면허, 군악 관련 기준** 【별지 #2 참조】

2)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27세 이하자

가) 제대군인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3735호)

제 19조에 의거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적용

- (1) 1년 미만의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1세(만 28세)
- (2)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2세(만 29세)
- (3) 2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3세(만 30세)
- (4) 제대 군인별 지원 가능 연령표(例 : 여군1기 지원자)

군 복무기간		임관일자	지원가능연령	생년월일
군 미필자		'15. 9. 1	만18세이상~만 27세이하	'87.9.2~'97. 9. 1
1년 미만		'15. 9. 1	만18세이상~만 28세이하	'86. 9. 2~'97. 9. 1
1년 이상~2년 미만			만18세이상~만 29세이하	'85. 9. 2~'97. 9. 1
2년 이상	양성 12주 과정	'15. 9. 1	만18세이상~만 30세이하	'84. 9. 2~'97. 9. 1
	양성 3주 과정	'15. 10. 1		'84. 10.2~'97. 10. 1

나) 기수별 입대 및 임관일자

모집 기수	양성교육 17주과정		양성교육 12주과정		양성교육 3주과정	
	입영일자	임관일자	입영일자	임관일자	입영일자	임관일자
여군1기	'15. 4. 27	'15. 9. 1	'15. 6. 4	'15. 9. 1	'15. 9. 3	'15. 10. 1
남군1기	'15. 5. 26	'15. 10. 1	'15. 7. 2	'15. 10. 1	'15. 9. 3	'15. 10. 1
남군2기	'15. 9. 21	'16. 3. 1	'15. 11. 5	'16. 3. 1	'16. 2. 4	'16. 3. 1
여군2기	'15. 12. 28	'16. 7. 1	'16. 2. 4	'16. 7. 1	'16. 2. 4	'16. 3. 1
비고	병역 미필자		하사이하 예비역		중사이상 예비역(육군, 해병대)	

3) 신 분

가) 군 미필자 및 예비역(퇴역인원포함)

나) 현역 복무중인 자는 입영일 이전에 전역가능 사람

다) 타군(해군, 공군, 해병대)에서 병사(현역/상근예비역)로 복무중인 사람

라) 전경, 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 공익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전환) 복무중인 사람

4) 기 타 : 군 인사법의 임관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제10조 ①, ②항)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에 임관될 수 없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형을 받은 사람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 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 및 선발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연관된 자는 선발 또는 임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지원 자격제한

가) 현역복무 시 중징계 처분 받은 자 또는 탈영 삭제되었던 자

나) 과거 선발과정 응시 시 임관결격 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다) 부사관 양성교육 중(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 단, 질병 및 성적, 개인 가사문제에 의한 퇴교인원은 제외

※ 양성교육 중 지원 자격 제한인원 **발견 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

6) 신체조건

가) 신체등급 3급 이상자 및 신체등위(신장·체중) 2급 이상자

나) 부사관 임관 공통 신체조건(공통)

구분	신장	체중	시력	비고
男	161cm~195cm	46~120kg 미만	· 교정시력 우 0.7, 좌 0.5이상 · 라식수술자 지원가능	문신자는 육규 판정 기준 적용
女	152cm~183cm	44~87kg 미만		

* 신체등위(신장·체중) 3급자는 최종선발 심의 시에서 **합·불** 판단한다.

* 문신자 판정기준 :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미만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에 있고, 합계면적 30cm²미만경우

☞ **신체등위 판정기준표(국방부령 제660호) 【별지 #3 참조】**

다) 병과 및 특기별 적용 신체조건

병과	특기	특기명	신 체 조 건	선 발 제 외
기갑	121	전차승무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 신장 164~184cm 이내 · 교정시력 : 0.8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언어 장애자 · 디스크(목, 허리 등)관절 이상자 · 폐쇄공포증 · 야맹증 장애자
	122	전차정비	-	
	123	장갑차	-	
포병	131	아전포병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신장 168cm 이상 · 교정시력 : 0.8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야맹증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 디스크 관절 이상자 · 폐쇄공포증
	132	로켓포병	-	
정보	151	인간정보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1급 이상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153	영상정보	· 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3급 이상 · 교정시력 : 0.8이상	
	155	UAV운용	-	
항공	181	항공운항	-	· 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난청 / 언어 장애자
	182	항공정비	-	
헌병	321	헌 병	· 신체등급 2급 이상 · 신장(남) : 164~195cm · 신장(여) : 157~183cm · 교정시력 : 나안 0.1이상 교정1.0 이상	·

*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 적용

4. 세부계획

가. 평가요소 및 배점 : 100점

구 분	계	1차 평가		2차 평가				
		필기평가, 인성검사	직무수행 능력평가	체 령 평 가	면 접 평 가	인 성 검 사	신 체 검 사	신 원 조 회
배 점	100	30	30	10	30	합 · 불	합 · 불	적 · 부
		*12점 미만 불합격		합 · 불	합 · 불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는 불합격 판정으로 면접평가 미실시

나. 1차 평가

1) 필기평가

구 분	지적능력 평가	직무성격/상황판단평가	국 사	인성검사
세부 내용	· 공간능력 · 언어능력 · 자료해석 · 지각속도	· 직무성격 검사 · 상황판단능력	· 국사	· MMPI-II 검사

가) 필기평가 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선발 제외**

나) 인성검사 결과 A·B·C·D·I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종 **합·불** 판정은 2차평가 시 심층면접 후 판정

다) **법무특기 1지망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평가는 **전공필기평가**로 대체

구 분	계	헌 법	민 법	형 법	형사소송법
배 점	30	8	7	8	7

* **전공필기 평가** : **법무(461)특기 1지망 지원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전원 대전/충남지역(대덕대학교)**에서 1차 필기평가하고 중식이후 14:50부터 실시

(2지망, 3지망 **법무(461)특기 지원자**는 해당사항 없음)

* **법무(1지망 지원자)**는 지원서작성시 응시지역을 **대전/충남지역** 지정할 것

2) 평가시간

구 분	시 간	장 소
수험생 등록	08:00~08:50(50')	평가장 입구
평가준비 / 설명	08:50~09:00(10')	평가교실
1교시	지적능력평가	09:00~10:30(90')
	국사평가	10:30~11:00(30')
	휴 식	11:00~11:20(20') · 휴식 / 답안지 분배 : 20'
2교시	직무성격검사, 상황판단능력평가	11:20~12:20(60')
	휴 식	12:20~12:40(20') · 휴식 / 답안지 분배 : 20'
3교시	인성검사	12:40~13:50(70')
4교시	전공필기평가	14:50~15:50(60')

3) 평가장소 : 12개 모집부대 지역별 고사장(모집부대장 선정)

응시지역	강 원		전남	충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부산	경 기		서울
	영서	영동								북부	남부	
모집부대	2 군단	8 군단	31 사단	32 사단	35 사단	37 사단	39 사단	50 사단	53 사단	6 군단	수도 군단	수방사
평가장소	수험표 출력시 공지											
소재지	춘천	강릉	광주	대전	전주	증평	마산	대구	부산	의정부	안 양	서울

* 평가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지원자 인원, 지원 대학사정 등 고려)

4) 직무수행능력평가

가) 전공 및 자격 / 면허

(1) 병과공통

구분	배점	A등급(15점)	B등급(12점)	C등급(9점)
전공	15	협약학과졸(전공)	협약학과졸(유사특기) 2년이상 전공대학 고교	비전공자 협약학과졸(비전공)
		예비역간부 - 장 교 : 해병과 - 부사관 : 해특기	예비역병장(군사특기)	예비역
자격/ 면허	13	A등급(13점)	B등급(11점)	C등급(9점)
		산업기사 이상(전공 면허(의무))	기능사(전공) 면허(조무사)	무자격자 비전공자격증

☞ 협약학과 출신의 전공관련 학과 적용 【별지 #4 참조】

(2) 헌병(서류전형) : 총 30점(자격 / 면허 22점, 고교출석 8점)

구분	세부기준		배점	
총 계			30점	
소 계			22점	
경력/ 자격증	정보처리 분야	기능사 이상	기술사, 기능장, 기사 2점 산업기사, 기능사 1점	
		워드프로세스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컴퓨터활용능력, PC활용능력 중 1개	2급(B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경비지도사, 전산회계운용사, 문서실무사 전사세무회계회계관리, 임상심리사, 행정사, 행정관리사, 정보보호전문가,	좌측 자격증 2개이상 보유	3점	
		좌측 자격증 중 1개 보유	2점	
	어 학	TOEIC(TEPS)	701~990점 (572점 이상)	2점
			500~700점 (402~571점)	1점
	한국어 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한자능력 관련(국가공인 자격)	2급 이상 2점 3급 이하 1점	
	무도단증	태권도	1단 이상 2점	
		기타 국가공인 단증 중 1개 종목만 반영	1단 이상 2점	
	자동차 관련 면허	1종	2점	
		2종 보통	1점	
MC 관련 면허	2종 소형	1점		
	소 계		8점	
고교 출석률 (성실성)	고교 출신자 ※ 사고지각 / 사고조퇴 2회를 결석 1회로 산정	고교 3년 개근	8점	
		고교 3년 정근	7점	
		2일 결석	6점	
		3일 결석	5점	
	검정고시 출신자 (과목별 득점 평균 점수)	100점	8점	
		90점 이상	7점	
	85점 이상	6점		
	80점 이상	5점		

(3) 군악(전공 실기평가)

구분	계	자유곡	초견
배 점	30	25	5

* 전공평가 : 평가일(별도통보)에 육군본부 군악대대에서 실시

(4) 군중(서류전형)

구분	계	자격 / 면허	고교출석
배 점	30	25	5

(가) 자격 / 면허

평가요소		배점
비서1급, 사서, 행정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정보처리기사		25점
비서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활1급, 워드, Microsoft office MCAS Master		20점
비서3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워드프로세서2급, 컴활2급, 정보검색사, Microsoft office Execele2007, Microsoft office Word2007, Microsoft office Power point2007, Microsoft office Accdss2007		15점
미소지자		10점

(나) 고교출석

평가요소					
고교출석	개근	1~3일	4~6일	7~9일	10일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검정고시	100점	90점이상	80점이상	70점이상	60점이상
	5점	4점	3점	2점	1점

나) 잠재역량(군악, 헌병, 법무, 군중 제외) : 기본점수 0.2점부여

평가요소	배 점	적 용 내 용
한국어	0.3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전 산	0.3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한 자	0.3	· 4급 이상
무 도	0.3	· 무도 1단 이상
리더십	0.3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 / 학생회 회장, 예비역 간부
영 어	0.3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기본점수	0.2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다) 가산점 :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해 평가과목별 배점의 5% 또는 10%를 가산점을 적용한다(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 평가과목별 배점의 40%미만 득점시는 미적용 한다.

다. 2차 평가

1) 기본방침

가) 1차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일자(1일)에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을 실시하고, 일자에는 조정 **불가함**.

나) 체력평가는 A, B조로 구분 편성 진행하며, 기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함

가) A조 (오전 : 체력평가, 오후 : 면접평가)

나) B조 (오전 : 면접평가, 오후 : 체력평가)

다) 체력평가 종목 중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면접평가 미실시

1) 체력평가

가) 총 괄

구 분	계	1.5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배 점	10	5	3	2

* 체력평가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자**는 불합격 처리

나) 종목별 등급배점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5	4.9	4.8	4.7	4.6	4.5	4.4	4.3	4.2		불합격
윗몸일으키기	3	2.97	2.94	2.91	2.88	2.85	2.82	2.79	2.76	1.5	불합격
팔굽혀펴기	2	1.98	1.96	1.94	1.92	1.90	1.88	1.86	1.84	1.0	불합격

☞ 체력평가 기준

【별지 #5 참조】

2)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 1, 2시험장에서 동시 진행

가) 평가요소별 / 배점

계(점)	제1시험장				제2시험장		종합 판정
	발표력, 표현력	국가관, 리더십	태도, 발음, 예절	품성, 성장환경	인성검사 (심층)		
30	5	10	5	10	합·불		합·불

나) 인성검사 : 면접평가 종합판정 시 **합·불** 판정적용

* 필기평가 시 작성했던 MMPI-II 결과를 토대로 전문면접관이 심층면접 후 최종 **합·불** 판정한다.

다) 종합판정

- (1) 시기 : 면접, 인성검사(심층)가 종료된 후 실시
- (2) 주관/참석대상 : 부사관병획득과장 / 전 면접관(6명)
- (3) 내용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 최종 판정
*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 결과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음.

3) 신체검사

가) 12개 모집부대장 책임하에 관할 지역별 국군병원에서 시행

나) 응시지역별 군 병원

구분	강원		전남	충남	전북	충북	경남	경북	부산	경 기		서울
	영서	영동								북부	남부	
모집 부대	2 군단	8 군단	31 사단	32 사단	35 사단	37 사단	39 사단	50 사단	53 사단	6 군단	수도 군단	수방사
병원명	춘천 병원	강릉 병원	함평 병원	대전병원			부산 병원	대구 병원	부산 병원	양주 병원	수도병원	
소재지	춘천	강릉	함평	대 전			부산	대구	부산	양주	성남	

다) 신체검사는 육규 161(건강관리 규정)을 적용하며, 1차 신검결과 재검 대상자 발생 시 최종심의 일정 고려 재검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라) 12개 모집부대장은 신체검사 결과 보고시 종합등급, 신장, 체중, 신체등위, 시력(나안 및 교정 구분한 좌, 우), 안경착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보고한다.

마) 여군부사관 산부인과 검사는 지정된 군병원에서 실시하나, 본인 희망시 병무청 지정 민간병원(258개)에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결과는 군병원으로 제출 / **합·불** 판정 시 적용

4) 신원조회 : 인사사령부에서 101기무부대 협조 시행(**적·부** 적용)

라. 선발심의

1) 선발심의는 인사선발심의위원회 “병”반으로 5~7명 이내의 영관장교 5명, 부사관 1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위 원 장	위 원	임명권자
대 령(1)	영 관(5명), 부사관(1명)	인력획득지원처장

2) 최종선발은 1차 및 2차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의의결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 및 可否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4) 동점자 선발우선순위는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평가, 필기평가, 체력평가 순으로 한다.

5) 모집계획상 부족특기 발생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할 수 있다.

마. 지원서 접수 및 제출방법

1) 인터넷 『**육군모집**』 접속⇒지원서 작성⇒지원서 출력⇒구비서류 제출

가) <http://www.goarmy.mil.kr> → 지원서작성

나) <http://www.army.mil.kr> → 육군모집 → 지원서작성

2) 구비서류 등기우편발송 : **지원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만 접수**

가) 우편번호 : 321-929

나) 주 소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2호

부사관병획득과 육군민간부사관 선발 담당자

바. 지원문의

1) 육군모집 홈페이지(<http://www.goarmy.mil.kr> → 부사관) 참조

2) 육군 대표전화 : ☎ARS 1588-6953, 042)550-7154~6, 7171

3) 법무부사관 안내전화 : ☎ 042)550-6621

4) 군악부사관 안내전화 : ☎ 042)550-6545

사. 1차 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제출서류

수험표(사진부착)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신원진술서 1부(다운로드 후 자필작성), 반명함판 사진(3×4cm) 1매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② 제출방법 : 2차평가 시 지참 후 제출

2) 제출시기 : 2차평가 시 지참, 제출

아. 부사관 연고지 복무신청은 입영 후 부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

☞ 부사관 연고지복무제도 안내

【별지 #6 참조】

자. 기본 제출서류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① 부사관 복무지원서(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②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중 1부(본인기준) : 읍, 면, 동사무소 발행 **3개월 이내** 서류
- ③ 고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해당자,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 인증서 및 성적표 제출)
 - * 중학교 졸업자 : 국가기술자격증 / 중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제출

- ④ 최종학력(고교졸업포함, 재학, 휴학, 재적) 증명서 1부
 - 해외고교출신자(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내)
 - ☞ APOSTILE 협약국가는 해당국 APOSTILE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 (정식고등학교 여부, 학위취득 및 성적증명서)
 - ☞ APOSTILE 미협약 국가일 경우 한국영사확인서 제출
 - 해외대학(교)출신자(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여권사본 각 1부
 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
 (대학(교)성적 산출기준(평균평점, GPA, A+~F등급 등) 포함 제출)
 해당국 어학성적 증명서 사본 / 한글번역본(법률사무소 공증 필) 각 1부(최근 2년내)
 - ☞ 일부 국가에 한해 주재국 증명서(APOSTILE) 제출 : 4년제 정식인가 대학여부, 학위취득 증명, 성적증명서 등
 - ☞ 중국 학사학위 졸업자 경우 중국 고등교육 사순보고 1부 추가 제출

⑤ 자격 / 면허증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1부(소지자)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만 인정**

- * 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격취득기관에서 발행 **자격취득 확인서**
- * 간호사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
- * 간호조무사 : 시·구청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 또는 해당기관의 원본 대조필 날인한 면허
- * 기사,산업기사, 기능사 : 협회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원본, 인터넷 발급만 인정, **복사본 미인정**)
- * 무도단증 : 협회에서 발행한 단 등록 확인서 또는 무력확인서
- * 운전면허증 : 경찰서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원본 또는 증명서만 인정, **복사본 미인정**)
- * 고교생활기록부 : **학교장 관인이 날인된** 사본(인터넷 발급 또는 학교에서 발급)
- * 개인 / 간인 : 여러장의 서류가 하나의 서류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로의 연결면에 찍는 인장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복사본 미인정**)

- * 한국어 / 영어 : 국어능력인증 자격증(4급이상), * KBS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전 산 : PCT 300점이상, 워드/컴퓨터 활용능력/ 정보관리사 3급이상 자격증
- * 한 자 : 4급 이상 자격증 * 영어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성적표
- * 무 도 : 1단 이상 단증 / 무력확인서
- * 리더십 : 고교반장/회장, 대학 과대표/회장 등(해당학교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된 원본)

⑥ 병적기록표 사본 각1부(해당자, 예비역) : 병무청 발행

- 장교, 부사관, 육군 병으로 복무중인자 : 전역예정 증명서 제출
- 타군병, 상근예비역, 전환/대체복무중인자 : 부대장 확인서 제출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보훈청발행)

- * 수험표는 개인별 출력하여 사진부착(반명함판사진 3×4cm 1매) 후 평가시 휴대
- * 구비서류 유효기간 : 3개월 이내 발행한 것만 인정

※ 학위 및 자격증, 잠재역량 등 관련된 서류 위조, 변조 사실 발견시 합격 / 입관 취소됨

※ 위의 서류 중 ①,②,③,④는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평가에 응시할 수 없음

☞ 예비역은 ⑥번 서류 포함 제출

별 지

별지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별지 #2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면허, 군약 관련 기준

별지 #3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 기준표
(남자/여자)

별지 #4 협약대학 특수학과 / 부사관과 특기분류
적용표

별지 #5 체력평가 기준

별지 #6 부사관 연고지 복무제도 안내

별 지 #1

기수별 모집특기 현황

과 정	계	111 일반 보병	121 전차 승무	122 전차 정비	123 장갑차 운용	131 야전 포병	132 로켓 포병	133 포병 작전	141 방공 기운용	151 인간 정보	152 신호 정보	153 영상 정보	155 UAV 운용	161 전투 공병	162 시 설 공병	163 공병 장비 운용 정비
여군1기	000	00	0	0	0	00	0	0	0	0		0	0	0	0	0
남군1기	000	00				00				00		00	00			
남군2기	000	00	00	00	0	00	0	00	0	00	00	00	00	0		00
여군2기	000	000	0	0	0	0	0	0	0	00		0	0	0	0	0

과 정	171 전술 통신 운용	174 특수 통신 운용	175 정보 체계 운용	181 항공 운항	182 항공 정비	211 화생 작전	231 물자 보급	232 장비 수리 부속 보급	234 조리	241 수송 운용	242 이동 관리	243 항안 운용	421 대포 정비	422 로켓 정비	423 유도 무기 정비	427 광학 감시 장비 정비
여군1기	00		0	0		0			0	0						0
남군1기										00						00
남군2기	00	0	0	0	0	0	0		0			0		0		
여군2기	00	0	0	0	0	0	0	0	0	00	0			0	0	0

과 정	428 전차 장갑차 정비	429 자주포 정비	431 전술 통신 정비	432 특수 통신 정비	436 차량 정비	437 공병 중장비 정비	441 탄약 관리	311 인사 행정	321 한병	331 재정	341 정훈	342 군약	411 의무	461 법무	471 군중
여군1기	0		0	0		0		00	0	0	0	0	00	0	0
남군1기	0		0			0			00					0	
남군2기	0	00	0	0		0	0	00	00	0	0	0	00		0
여군2기	0	0	0	0	0	0	0	00	00	0	0	0	00	0	0

※ 세부적인 모집 특기 인원은 해당 기수별 모집선발 계획을 참고

의무관련 학과 및 자격·면허, 군악 관련 기준

○ 전공학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국방의료과 재활공학과(의용공학, 의료보장구), 재활학과(재활치료), 치기공과, 치위생과, 생명보건학부, 보건계열, 보건복지계열, 보건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보관리과, 보건행정계열, 보건행정과, 보건과학계열, 보건시스템과, 환경과학계열, 보건환경과, 보건환경위생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 환경관리과, 환경기술, 환경보건시스템과, 환경위생과, 환경행정과, 동물생명과학, 식품위생, 수의, 화학분석 등

○ 면허 / 자격증

구 분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면 허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 안경사, 물리치료사 · 간호사, 치과기사 ·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조산사,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증 (11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위생관리기사 · 응급구조사 1급 · 의공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기록사 · 응급구조사 2급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의공산업기사 · 정신보건임상심리사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 의료관리사

○ 군악 관련 기준

- 목관악기 : 플룻, 클라리넷, 바순, 오보에, 색소폰
- 금관악기 : 트럼펫, 트롬본, 유포늄, 호른, 튜바
- 현악기 :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 타악기 : 셋드럼, 팀파니, 마린바
- 국악 : 대금, 피리,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타악 등
- 피아노, 작곡, 성악, 실용음악 등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국방부령 제660호 / '08. 12. 24부)

□ 남군 신체등위 기준

구 분	체 중 (kg)				
	신장(cm) / 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158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38이상~97미만		38미만, 97이상
161~163	51이상~63미만	46이상~51미만 63이상~81미만	38이상~46미만 81이상~102미만		38미만, 102이상
164~166	53이상~66미만	46이상~53미만 66이상~83미만	38이상~46미만 83이상~106미만		38미만, 106이상
167~169	55이상~69미만	46이상~55미만 69이상~85미만	38이상~46미만 85이상~108미만		38미만, 108이상
170~172	58이상~72미만	48이상~58미만 72이상~88미만	39이상~48미만 88이상~110미만		39미만, 110이상
173~175	60이상~75미만	49이상~60미만 75이상~90미만	39이상~49미만 90이상~113미만		39미만, 113이상
176~178	62이상~78미만	51이상~62미만 78이상~92미만	40이상~51미만 92이상~113미만		40미만, 113이상
179~181	64이상~81미만	53이상~64미만 81이상~94미만	43이상~53미만 94이상~113미만		43미만, 113이상
182~184	68이상~84미만	54이상~68미만 84이상~96미만	44이상~54미만 96이상~113미만		44미만, 113이상
185~187	70이상~87미만	56이상~70미만 87이상~113미만	45이상~56미만 113이상~118미만		45미만, 118이상
188~190	72이상~90미만	58이상~72미만 90이상~120미만	46이상~58미만 120이상~130미만		46미만, 130이상
191~195	75이상~93미만	58이상~75미만 93이상~120미만	48이상~58미만 120이상~135미만		48미만, 135이상
196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 여군 신체등위 기준

구 분	체 중 (kg)			
신장(cm) / 등급	1 급	2 급	3 급	4 급
152 미만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2~154	46이상~60미만	44이상~46미만 60이상~63미만	40이상~44미만 63이상~66미만	40미만, 66이상
155~157	48이상~63미만	45이상~48미만 63이상~65미만	43이상~45미만 65이상~69미만	43미만, 69이상
158~160	50이상~64미만	47이상~50미만 64이상~68미만	45이상~47미만 68이상~72미만	45미만, 72이상
161~163	52이상~67미만	49이상~52미만 67이상~69미만	46이상~49미만 69이상~74미만	46미만, 74이상
164~166	54이상~70미만	51이상~54미만 70이상~73미만	48이상~51미만 73이상~76미만	48미만, 76이상
167~169	56이상~72미만	53이상~56미만 72이상~75미만	49이상~53미만 75이상~79미만	49미만, 79이상
170~172	58이상~75미만	54이상~58미만 75이상~78미만	51이상~54미만 78이상~82미만	51미만, 82이상
173~175	60이상~78미만	57이상~60미만 78이상~81미만	53이상~57미만 81이상~85미만	53미만, 85이상
176~178	62이상~80미만	59이상~62미만 80이상~83미만	55이상~59미만 83이상~90미만	55미만, 90이상
179~181	64이상~83미만	61이상~64미만 83이상~86미만	57이상~61미만 86이상~93미만	57미만, 93이상
182~183	66이상~85미만	63이상~66미만 85이상~87미만	58이상~63미만 87이상~98미만	58미만, 98이상
184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별 지 #4

협약대학 특수학과 / 부사관과 특기적용 기준표

□ 특수부사관학과

학 과	직접관련 특기	유사관련 특기
특수장비과	121: 전차승무 122: 전차정비 123: 장갑차운용 429: 자주포정비 428: 전차/장갑차운용정비	132: 로켓포병 241: 수송운용 423: 유도무기정비 436: 차량정비 437: 공병중장비정비
특수통신과	171: 전술통신운용 174: 특수통신운용 431: 전술통신정비 432: 특수통신정비	153: 영상정보
국방정보통신과	171: 전술통신운용 431: 전술통신정비 432: 특수통신정비	174: 특수통신운용 152: 신호정보
헬기정비과	182: 항공정비	174: 특수통신운용 432: 특수통신정비
특수자동차정비과	241: 수송운용 436: 차량정비	428: 전차/장갑차운용정비 437: 공병중장비정비
국방탄약과	132: 로켓포병 422: 로켓정비 423: 유도무기정비 441: 탄약관리	437: 공병중장비정비 211: 화생방작전
총 · 포광학과	132: 로켓포병 426: 총포정비 427: 광학/감시장비정비 429: 자주포정비	133: 포병작전 211: 화생방작전 437: 공병중장비정비
방공유도무기과	133: 포병작전 141: 방공무기운용 421: 방공포정비 423: 유도무기정비	422: 로켓정비
국방물자과	231: 물자보급 232: 장비수리부속보급	
특수건설장비과	161: 전투공병 163: 공병장비운용/정비 211: 화생방작전 437: 공병중장비정비 232: 장비수리부속보급	241: 수송운용 436: 차량정비
국방화학과	211: 화생방운영	441: 탄약관리 423: 유도무기정비
국방의료과	411: 의무	
조리부사관과	234: 조리	231: 물자보급 232: 장비수리부속보급

□ 일반부사관과

학 과	직접관련 특기	유사관련 특기
방공유도무기과	141: 방공무기운용	132: 로켓포병 422: 로켓정비 423: 유도무기정비 441: 탄약관리
정보통신부사관과 / 국방전자통신과	171: 전술통신운용 174: 특수통신운용	
공병부사관과 / 건설정보부사관과	161: 전투공병 162: 시설공병 163: 공병장비운용 / 정비	211: 화생방작전
일반부사관과	111: 일반포병 113: 특전포병 131: 야전포병 132: 로켓포병 133: 포병작전 151: 인간정보 152: 신호정보 153: 영상정보 121: 전차승무	311: 부관 312: 군악 331: 재정 341: 정훈

체력평가 기준

□ 남 자

등 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25세 이하	6'08" 이하	6'18" 이하	6'28" 이하	6'38" 이하	6'48" 이하	6'58" 이하	7'08" 이하	7'18" 이하	7'28" 이내	7'29" 불합격	
	26세 ~30세	6'18" 이하	6'28" 이하	6'38" 이하	6'48" 이하	6'58" 이하	7'08" 이하	7'18" 이하	7'28" 이하	7'38" 이내	7'39" 불합격	
윗몸 일으키기 (2분)	25세 이하	82회 이상	78회 이상	74회 이상	70회 이상	66회 이상	62회 이상	58회 이상	54회 이상	50회 이상	30회 이상	30회 미만
	26세 ~30세	80회 이상	76회 이상	72회 이상	68회 이상	64회 이상	60회 이상	56회 이상	52회 이상	48회 이상	28회 이상	28회 미만
팔굽혀 펴기 (2분)	25세 이하	72회 이상	68회 이상	64회 이상	60회 이상	56회 이상	52회 이상	48회 이상	44회 이상	40회 이상	25회 이상	25회 미만
	26세 ~30세	70회 이상	66회 이상	62회 이상	58회 이상	54회 이상	50회 이상	46회 이상	42회 이상	38회 이상	23회 이상	23회 미만

□ 여 자

등 급		등급별 차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불합격
1.5km 달리기	만 25세 이하	10초	7'39" 이하	7'49" 이하	7'59" 이하	8'09" 이하	8'19" 이하	8'29" 이하	8'39" 이하	8'49" 이하	8'59" 이내	9'00" 이후 불합격	
	만 26세 ~30세		7'49" 이하	7'59" 이하	8'09" 이하	8'19" 이하	8'29" 이하	8'39" 이하	8'49" 이하	8'59" 이하	9'09" 이내	9'10" 이후 불합격	
윗몸 일으키기 (2분)	만 25세 이하	4회	67회 이상	63회 이상	59회 이상	55회 이상	51회 이상	47회 이상	43회 이상	39회 이상	35회 이상	25회 이상	25회 미만
	만 26세 ~30세		64회 이상	60회 이상	56회 이상	52회 이상	48회 이상	44회 이상	40회 이상	36회 이상	32회 이상	22회 이상	22회 미만
팔굽혀 펴기 (2분)	만 25세 이하	2회	35회 이상	33회 이상	31회 이상	29회 이상	27회 이상	25회 이상	23회 이상	21회 이상	19회 이상	16회 이상	16회 미만
	만 26세 ~30세		33회 이상	31회 이상	29회 이상	27회 이상	25회 이상	23회 이상	21회 이상	19회 이상	17회 이상	12회 이상	12회 미만

※ 1개 종목이라도 불합격시 체력검정 불합격(면접평가 미실시)

부서관 연고지복무제도 안내

□ 연고지 복무제도란?

• 연고지(지연, 학연 등)에 소재하는 부대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을 선발하여 복무하게 하는 제도
※ 사단급 이하부대 근무(GOP 또는 GP 근무도 가능)

☞ 연고지 개념 : 혈연이나 지연 또는 법률상으로 관계가 맺어진 곳
(출생지, 성장지, 현 거주지 등 인연지역)

○ 연고지 복무제도 적용부대

부 대	1군사			기계화부대
	2군단	3군단	8군단	
	7·15·27사단, 군단직할	2·12·21사단, 군단직할	22·23사단, 102여단, 군단직할	11·20·수기사
지 역	화천·철원군, 춘천시	인제·양구군	고성·양양군, 속초· 삼척시·동해·강릉시	홍천·양평·가평군, 포천시
부 대	3군사			
	1군단	5군단	6군단	
	1·25사단, 군단직할	3·6·8사단, 군단직할	5·26·28사단, 군단직할	
지 역	파주·의정부·고양시	철원군, 포천시	연천군, 양주·포천·동두천시	
부 대	2작사(5개사단)			
	31사단	32사단	35사단	39사단
	93-1·2·3·4대대 95-1·2대대 96-1·2·3대대	97-1·2대대 98-1·2·3대대	105-1·2대대 106-1대대	117-1·2·3대대 118-2·4대대
연 고 지 역	진도·완도·해남군, 강진·무안·고흥군, 여수·순천·목포시	보령·서천시, 태안군, 당진시	부안·고창군, 군산시	고성군, 거제· 통영·남해·사천시
				울진·영덕군

* 전방군단 및 해·강안부대 중 9·30·53사단 제외

○ 연고지복무 신청 자격조건

- 출생지, 성장지, 학교, 직장소재지가 과거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함.
- 현 거주지는, 부모와 함께 거주할 경우는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본인 단독으로 거주시는 2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함.

※ 증빙서류 :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원 가능한 병과

☞ 일반보병, 기갑, 포병, 방공, 인간정보, 공병, 정보통신, 화학

○ 연고지 복무 신청 / 분류 : 부서관학교

- 연고지 관련기록이 허위로 판명 시 선발 및 부대 배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군인사법 시행령[시행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타법개정]

○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할 수단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1.19.]